

상 조 회 칙

제정 1987.10.16	개정 1995.04.01	개정 2007.04.01	개정 2019.06.01	개정 2022.03.30
개정 1990.03.01	개정 1997.04.16	개정 2008.04.01	개정 2019.08.27	개정 2022.08.01
개정 1992.03.01	개정 2001.06.01	개정 2010.04.01	개정 2019.11.01	
개정 1992.05.18	개정 2002.04.01	개정 2010.04.30	개정 2020.04.01	
개정 1993.04.01	개정 2002.07.29	개정 2011.04.01	개정 2021.04.01	
개정 1993.12.16	개정 2003.04.01	개정 2012.11.07	개정 2021.09.01	
개정 1994.05.01	개정 2004.05.01	개정 2015.04.01	개정 2022.03.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포항공과대학교 상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직원의 상호부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원금의 지급.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은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삭제
3. 기타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업

제4조(구성 및 업무처리 기준) 본회에는 회장, 간사, 대의원회 및 감사를 둔다. 본회의 사업 및 본회와 관련된 업무는 본회칙에 근거하여 회장이 집행하며, 세부적인 업무는 회장의 위임을 받아 간사가 수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①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고 그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퇴직일 또는 탈퇴일까지로 한다.

1. 포항공과대학교의 전임교원(방문교수, 대우교수, 박사연구원, 조교 제외)
2. 대학 및 법인 정규직원(축탁직 포함)
3. 상근계약직원
4. 가속기연구소 전임직원

② (삭제: 2020.4.1.)

③ 위의 자격자는 임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표2’의 교직원상조회 가입 동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정지) ①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기 납입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자격이 정지된 자는 재가입할 수 없다.

제 3 장 회 의 운 영

제7조(회의 운영기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 및 대의원회를 둔다.

1. (임원) 본 회의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가. 회장은 당연직으로서 행정처장이 겸임한다.

나. 감사는 교원 1인, 직원 1인으로서 회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2.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다음 1호의 구성으로 하며 의장은 회장이 겸한다.

가. 교원 3인, 직원 4인(대학 3인, 가속기 1인)으로 하는 대의원

3. 대의원회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보선에 의하여 임명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8조(대의원회 기능 및 선출)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회칙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회비의 조정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1. 교무처장이 추천하는 전임교원

2. 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대학 직원

3. 가속기연구소장이 추천하는 가속기연구소 직원/연구원

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한다.

④ (삭제: 2019.08.20.)

⑤ 감사는 회의 운영과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9조(대의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 회계연도 초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에 의해 또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소집권자의 동의에 의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③ 대의원회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4 장 기금조성 및 관리

제10조(기금조성) 본 회의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회원의 기부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기타 수익금

제11조(회비) ① 회원은 매월 20,000원을 회비로 납부한다.

② 신규가입 회원은 가입당시의 급여액(1개월분)을 기준으로 3개월분에 해당하는 회비를 입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07.29.)

제12조(기금관리) ① 본 회의 기금은 금융기관의 예금형태로 관리하며, 간사는 현금시제를 운영할 수 없다.

② 내·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대학 조직 분리시 1인당 분담금은 총기금에서 총인원을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 5 장 지원금

제13조(지급금액) 지원금의 종류와 지급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후단 삭제)

제14조(신청 및 지급) ① 지원금 수급대상 회원은 POVIS시스템(Human Resource-경조금 신청)으로 신청하며, 이 경우 회장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6 장 대 부(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 7 장 예산 및 결산

제1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포항공과대학교의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한다.

제20조(예산) 본회 예산서는 각 회계연도 개시전 1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다만, 실무목적상 직전연도 결산서와 함께 보고·승인

할 수 있다.

제21조(결산) ① 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감사는 결산서를 감사하고 대의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22조(발의) 회칙개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의한다.

1.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
2. 회원 4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23조(의결) ① 회칙개정의 정족수는 제9조 제3항과 같다.

② 회장은 회칙개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5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1997년 4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배우자 회갑 경조금은 1997년 3월 1일부터 호적등본에 의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6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 가. 이 회칙 중 제6장 대부조항(제15조, 16조, 17조, 18조)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나. 이 회칙의 개정으로 상조회 대부 시행지침은 개정일부로 폐지한다. 단, 폐지일 이전 기존 적용자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시행지침에 따른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0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회칙중 제3조(사업), 제11조(회비)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 제5조(자격) 제2항의 “법인으로 전보된 대학직원 중 본인 희망자“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 연봉계약직원 2000년 4월 1일부 가입, 제8조(대의원회 기능)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회칙은 2002년 7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조금지급 기준) 배우자회갑 축의금은 회원 본인회갑 축의금과 통합 지급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삭제) 2019.08.27 단, 현 상조회원인 연봉 계약직원은 회원자격 유지
3. 경조사 동일건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회칙 중 제2장 회원조항(제5조 제1항의 제3호, 제4호, 제5호)에 대해서는 가입여부는 본인이 결정하고 가입일 이전 경조금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이 회칙 중 제3장 회의운영조항(제7조 제2항의 제2호)에 대해서는 차기대의원을 선출(2011년 4월)할 때 시행 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0년 4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퇴직자 요청 시 본인부담으로 조문용품(약30만원상당)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12년 11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이 회칙 중 제2장 회원조항(제5조 3항)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자는 동의로 간주하고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비상조교직원(퇴직교직원 포함)이 조문용품을 요청시 본인부담(250,000원)으로 조문용품만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상조회 수입으로 상조회 운영통장으로 입금한다.(삭제: 2022.8.1부)

부 칙

개정회칙은 2019.6.1부로 시행한다.

부 칙

개정회칙은 2019.8.27부로 시행한다.

부 칙

개정회칙은 2019.11.1부로 시행한다.

부 칙

개정회칙은 2020.4.1부로 시행한다. 다만, 제 13조 후단 삭제는 2019.8.27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회칙은 2021.4.1.부로 시행한다.

부 칙

개정회칙은 2021.9.1.부로 시행한다.

부 칙

개정회칙은 2022.3.1.부로 시행한다

부 칙

개정회칙은 2022.3.30. 개정되었으나, 2022.3.1.부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 칙

개정회칙은 2022.8.1.부로 개정, 시행한다.

(별표 1) 지원금 지급기준

지원금 지급기준

(단위: 원)

구 분	종 별	지급금액	조문용품	기관경조금 (조화)	비 고
축의금	본인결혼	600,000	-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조사 동일건 1회 지급 ■ 본인회갑 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분(800,000원) 지급 (2021.04.01부) ■ 주민등록등재 자녀 장례용품 지원(2005.04월부) ■ 비상조 교직원(퇴직교직원 포함)이 조문용품을 요청 시 현 시세에 맞춰 조문용품만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상조회 수입으로 상조회 대학 통장으로 입금함.(2022.08.01부) ■ 조문용품은 천재지변, 해외 또는 상조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2022.08.01부)
	자녀결혼	500,000		100,000	
	부모회갑	500,000		100,000	
	배우자부모회갑	500,000		100,000	
	본인회갑	800,000		0	
	본인+배우자회갑	1,300,000			
조의금	본인사망	10,000,000	1세트	2,000,000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조 교직원(퇴직교직원 포함)이 조문용품을 요청 시 현 시세에 맞춰 조문용품만 지원하고 본인 부담금은 상조회 수입으로 상조회 대학 통장으로 입금함.(2022.08.01부) ■ 조문용품은 천재지변, 해외 또는 상조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2022.08.01부)
	배우자사망	4,500,000		300,000 (100,000)	
	자녀사망	1,500,000		300,000	
	부모사망	900,000		300,000 (100,000)	
	배우자부모사망	900,000		300,000 (100,000)	
	본인조부모사망	500,000		150,000	
	배우자조부모사망 (2019.6.1부)	500,000		150,000	
	본인친형제자매상	100,000		100,000	
	배우자친형제자매상 (2021.9.1부)	100,000		100,000	
	본인외조부모사망 (2021.9.1부)	500,000		150,000	
배우자외조부모사망 (2021.9.1부)	500,000	150,000			
전별금	3-5년 재직회원	150,000			본인 사망 시 전별금 미지급 재직기간은 회원가입일 기준
	6-8년 재직회원	300,000			
	9-11년 재직회원	600,000			
	12-14년 재직회원	900,000			
	15-17년 재직회원	1,200,000			
	18-21년 재직회원	1,500,000			
	22년 이상 재직회원	1년 경과시마다 5만원추가			
기 타	장례보조비 (본인사망)	5,000,000 (2022.3.1부)			상조회에서 현금지급 또는 장례비용으로 집행

(별표 2) 교직원 상조회 가입/탈퇴 동의서

교직원상조회 (□가입 □탈퇴) 동의서

소속구분	<input type="checkbox"/> 교수 <input type="checkbox"/> 직원 <input type="checkbox"/> 법인임직원 <input type="checkbox"/> 가속기연구소원		
부서명			
직번		성명	
가입일자	20 . . .		
탈퇴일자	20 . . .		
입회비 및 회비 납부방법	급여공제		
<p>상기 본인은 대학규정 상조회칙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였기에 포항공과대학교 교직원상조회 가입 및 탈퇴에 동의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동의자 : (서명)</p> <p style="margin-left: 100px; margin-top: 50px;">포항공과대학교 교직원상조회 귀중</p>			